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윤 성 진	직 급	서기관
훈련국	미국	훈련기간	'23. 6. ~ '25. 5.
훈련기관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보고서 매수	119 매
훈련과제	관세 제도		
보고서 제목	미국 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비규제적 심사제도 발전방안 연구		
내용 요약	I. 서론 현재 한국 심사제도의 근간은 “통관 후 심사”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신속 통관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우리를 포함한 선진 세관행정은 사실상 이를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국가별 제도를 설계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관세행정 중 심사 분야의 큰 대원칙인 ‘통관 후 심사제도’ 하에서 구성된 여러 하위 제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러한 문제점의 본질적인 원인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불완전한 이행’에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필수 선결조건들을 제시하고, 그 방안으로서 가격신고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기본 프레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 개선을 전제조건으로서 충족한 상태에서, 심사행정 전체를 효율화 시킬 수 있는 후행 개선 사항도 설명한다. II. 현 가격신고제도의 문제점 관세평가협정에 의한 가격신고 방법을 수용하려면 가격신고가 ‘시점’이 아니라 ‘기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II. 제도 개선의 필수 조건: 가격신고제의 정상화 1. 신고가격 불확정기간의 도입 수입통관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불확정기간으로 필요하		

다. 불확정기간 내에서는 관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되는 물품의 신고가격이 확정되지 않는다. 불확정기간 이내에 있다면 수입자는 세관에 신고한 물품세액에 대해 자유로이 변경할 권한을 갖는다. 세관당국 또한 신고한 물품세액에 대해 검증할 권한을 갖는다.

2. 건별 검증제도의 확립

수입신고 건 중 수입자를 기준으로 현저히 고가 또는 저가로 이뤄진 가격신고 건을 검증 대상으로 한다. 건별 검증에 따라 세관 담당자는 ‘낮은 위험’, ‘위반’, ‘판단불가’의 3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건별검증에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된다.

3. 가격신고제도의 개선

가격신고제도의 정상화는 본 개선안의 핵심 선결조건이다. 가격신고서의 개선방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수입자의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도의 신고사항만을 수집해야 한다. 둘째, 신고사항은 세관당국이 분석할 수 있는 정보로 수집되어야 한다.

4. 관세평가협정의 재해석

관세평가협정의 전면 재해석 및 정부 차원의 공식 국문협정이 필요하며, 관세평가협정의 법규성을 제고해야 한다.

IV. 기업단위 심사제도의 변화

1. 기업심사 제도의 확립

건별 검증과 기업심사는 별개의 행정이 아니라, 연속된 하나의 행정이다. 기업심사 제도는 건별 검증과 상호보완 관계를 이루도록 구성해야 한다. 건별 검증은 기업심사에 심사가 필요한 물품(또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기업심사는 건별 검증의 실효성과 업체의 건별 검증시의 법규 준수 필요성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심사는 ① 건별 검증 결과에 따른 심사, ②분석에 의한 심사, ③신청에 의한 심사, ④무작위 선정에 의한 심사로 새롭게 유형

을 분류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신고가격이 확정된 건이 심사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기존의 경우는 최대 5년의 기간이 심사 대상기간이 되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확정적 1년으로 단축되게 된다.

2. 원산지 검증제도의 정상화

현재의 기업심사 방식에 기초를 둔 원산지 검증 운영방식을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건별 검증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 검증 결과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기업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도 측면으로 보자면, 원산지의 심사가 기업심사의 한 분야로 편입·통합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추가적으로 해외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V. 각론

제도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모든 심사행정은 가격신고서로부터 업무가 파생되게 된다.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관당국은 가격신고서 간소화 노력을 해야 한다.

2. 거래가격 채택과 관련한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 간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3. 관세평가 4방법의 적용 문제는 그간 정확한 이윤의 산출 방법에 관한 쟁점으로부터 논리 증명 관계로 전환된다.

4. 성실한 자료제출이 기업의 우월전략이 될 수 있다.

5. 사전심사제도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

6. 가산세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운영이 보다 명확해진다.

7. 건별 검증 조직을 활용하여 2급지 세관 활성화 및 특화세관의 도입이 가능해지며, 역량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8. 성과관리의 개편이 필요하며, 입증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중복조사, 심사결과의 편차, 국세와 관세의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